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65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소위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67	문진석의원 등 11인	'25.10.23.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0.)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74	이연희의원 등 12인	'25.11.4.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0.)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98	안태준의원 등 10인	'25.11.10.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0.)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83	박용갑의원 등 19인	'25.11.17.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0.)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32	한정애의원 등 12인	'25.11.21.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6.2.10.)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소위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24	윤재옥의원 등 10인	'25.12.1.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0.)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54	윤재옥의원 등 10인	'25.12.3.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0.)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30.)는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된 이후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9곳은 지구지정 2~3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26.4월 기준). 다만,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속도 및 사업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음으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주택 공급이 중요하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 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를 도입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장기 미사용 또는 미매각 토지가 발생 중임. 이러한 토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을 검토할 근거는 미비하므로, 정부가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조정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사업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공공개발토지”란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바. 재조정사업: 준공된 공공개발토지 중 일부의 용도를 재조정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제8조제4항제1호 중 “제9조”를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제9조”로, “제13조에 따른”을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으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이가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 지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조정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①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이하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공공개발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개발토지(민간이 소유한 공공개발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미활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2.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절차를 거쳤으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의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제출한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재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의 제출과 재조정안 심의 요청 시 구비서류, 절차, 방법, 토지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 면적은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

과할 수 없다.

③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는 제2장(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제외한다)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재조정안을 제안한 자”로 본다.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재조정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공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된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6에 따라 재조정구역을 지정·변경(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을 지정·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이전에 공공개발토지의 개발·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를 “복합사업계획(「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3인”을 “37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및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시·도조례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단장 또는 위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및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10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12호와 관련된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와 관련된 서류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및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장의2(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구조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교육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제33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제2항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위원의 해촉기준

등 재구조화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의5(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재구조화위원회는 재조정안을 심의하여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 또는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공고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가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이 신탁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토지등소유자가 제8항에 따른 동의를 위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

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제40조의8제4항제2호 중 “협의를”을 “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40조의9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0조의10제5항제3호 중 “상속 또는 이혼을”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후보지 선정일 이후”를 “후보지 선정일(지정권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일 전에 따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후”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을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는 경우

제40조의12제2항 전단 중 “토지등소유자”를 “주민협의체”로 한다.

제40조의13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등소유자”

를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명령을”을 “명령 등의 조치를”로 한다.

② 복합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합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의17”을 “제32조의6제3항 또는 제40조의17”로 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27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제40조의7, 제40조의9,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부분,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0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51조, 제55조 및 제56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40조의7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부분,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0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51조, 제55조 및 제5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음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변경협의 또는 재협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상액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 ①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복합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으로 복합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32조의6 및 제40조의7	공공주택지구, 재조정구역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의2. (생략)</p> <p><u><신설></u></p> <p>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p>가. ~ 마. (생략)</p> <p><u><신설></u></p> <p>4.·5. (생략)</p> <p>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 ③ (생략)</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의2. (현행과 같음)</p> <p>2의3. “<u>공공개발토지</u>”란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u>일단의 토지를 말한다.</u></p> <p>3. -----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재조정사업: 준공된 공공개발토지 중 일부의 용도를 재조정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u></p> <p>4.·5. (현행과 같음)</p> <p>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 ② (생략)

<신 설>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 지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장의2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

<신 설>

⑥ (생략)

<신 설>

<신 설>

조정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①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이하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공공개발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개발토지(민간이 소유한 공공개발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미활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2.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절차를 거쳤으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의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제출한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재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의 제출과 재조정안 심의 요청 시 구비서류, 절차, 방법, 토지의 범위와

<신 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 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 면적은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신 설>

등에 관하여는 제2장(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제외한다)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재조정안을 제안한 자”로 본다.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재조정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공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된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6에 따라 재조정구역을 지정·변경(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을 지정·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이

1. ~ 8. (생략)

<신설>

<신설>

9. · 10. (생략)

② (생략)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및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시·도조례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 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37인-----

④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
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
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
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
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
원 계산

<신설>

3. (생략)

⑦ ~ ⑨ (생략)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
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

1. (현행과 같음)

2. -----사업계획-----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
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
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및 제40
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
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
지, 제12호 및 제13호의 위원
으로 재적위원 계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
차 등) ① -----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3.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제12
호와 관련된 서류

3. (현행과 같음)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와 관련된 서류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장기공공임대주

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및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장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 심의위원회

<신 설>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구조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교육 분야 등의 전

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제33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

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제2항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위원의 해촉기준 등 재구조화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신 설>

<신 설>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의5(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재구조화위원회는 재조정안을 심의하여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 또는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생략)

④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가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경우

3. (현행과 같음)

④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공고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신 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⑨ 토지등소유자가 제8항에 따른 동의를 위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⑩ -----

-----.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 바. (생략)

5. (생략)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⑧ ~ ⑫ (생략)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고하는 경우에는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후-----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

가. ~ 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⑦ -----

1.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협의체--

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55조(감독) ① (생략)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복합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합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

회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명령 등의 조치를-----

-----.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제55조제1항 및 제2항-----
-----.

제57조(벌칙) ① -----
-----제32조의6
제3항 또는 제40조의17-----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9년 12월 31일-----
-----.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
-----2029년 12월 31일-----.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

-----2029년 12월 31일-----.

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 -----
-----2029년 12월 31일-----
-----.